

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신동원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95호

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
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

서울시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, 상위
법령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완화 기준
인 임대 의무기간이 삭제되었습니다.

이에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하여 신축공공임대주택을 건
설 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
게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
하였습니다.

-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에 경우 임대 의무 기간에 관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여러분,
본 의원이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주시고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